##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46 발의연월일: 2021. 9. 23.

발 의 자: 허종식 · 김성주 · 김정호

어기구・윤관석・배진교

정일영 · 이성만 · 홍영표

최종윤 · 김교흥 · 신동근

유동수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 문제로 대 두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입을 입국단계에서 차단하 는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.

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공·항만 입국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입국자 뿐 아니라 출국자도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·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.

또한, 검역소내 격리시설 뿐 아니라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도 검역소 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적안전성을 확보하고, 국내 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하고, 국제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제2항, 제15조제4항, 제16조제1항, 제27조제4항, 제29조제2항, 제34조제1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2항 중 "입국장"을 "입국장 등"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전단 중 "알리고"를 "알리고 회항 또는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"검역소"를 "검역구역"으로 한다.

제27조제4항 중 "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"를 "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"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"검역소장"을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호 중 "제4호"를 "제4호, 제4호의2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2(신고의무 및 조치 등)	제12조의2(신고의무 및 조치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	②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	
있도록 공항, 항만 및 육로의 <u>입</u>	이
<u>국장</u> 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	<u>국장 등</u>
설치하여야 한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검역조치) ① ~ ③ (생	제15조(검역조치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	4
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	
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	
그 이유를 <u>알리고</u> 검역소장이	<u>알</u> 리고 회항 또는
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	
지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	
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	
라야 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	제16조(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
리)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	리) ①
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	
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
나에	해당	하는	시설이	게 격	리한
다. 다	·만, ㅅ	나람 7	간 전피	-가능	성이
낮은	경우	등	질병괸	리청	장이
정하는	는 경	우는	격리	대상	에서
제외힘	할 수	있다.			

-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<u>검역</u>
  소 내 격리시설
- 2. ~ 5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- 제27조(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조 등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 (船籍地)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면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⑤・⑥ (생 략)
- 제29조(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) 저
  - ① (생략)
  - ② <u>검역소장</u>은 제1항에 따른 조 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

· 
<u>.</u>
1 검역
구역
<del>' '</del> 2. ~ 5. (현행과 같음)
2 6 (현행과 같음)
세27조(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
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(4)
4)
선박위생관리 면제증
명서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위생
<u>관리 증명서</u>
⑤·⑥ (현행과 같음)
세29조(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)
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질병관리청장</u>

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 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34조(수수료의 징수) 질병관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, 화물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 ·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.
  - 제15조제1항제3호, <u>제4호</u>, 제
    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

1의2. • 2. (생략)

제34조(수수료의 징수)
<u>.</u>
1 <u>제4호, 제4</u>
호의2
1의2.·2. (현행과 같음)